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64
----------	-----

제출년월일 : '98.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문산성병진료소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 일원 윤락여성의 성병발생 예방 및 전파를 미연에 방지코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주한미군철수등 주변상황의 변화로 검진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문산성병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있는 성병관리소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함.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푸른환경 맑은사회, 살기좋은 으뜸파주”

파 주 시

우413-020 파주시 아동동 345-1번지 ☎ 943-2144(행54) FAX 943-2142 담당 이명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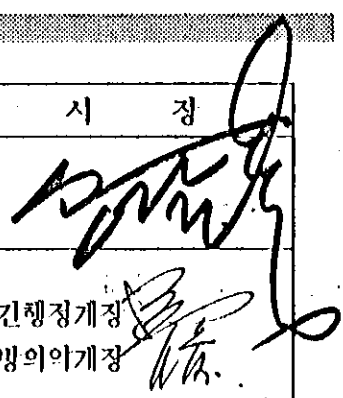
문서번호 보건 65330 -247

시행일자 1998. 2. 5

(경 유)

발 음 경기도지사

참 조 보건과장

취 급		시 정
보 존	년	 보건행정계장 예방의과계장
부 시 정	호	
소 장	장	
기안지	이명향	

제 목 문산성병진료소 폐쇄 건의

본 시에 설치되어 있는 문산성병진료소의 윤곽이성검진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불임과질이 폐쇄를 건의코지 합니다.

붙 임 문산성병진료소 폐쇄건의안 1부.



파 주 시 장

“나의건강 가족행복 우리건강 맑은미래”

문산성명진료소 폐쇄건의안

□ 현황

- 1977년도에 신축 내지 89평 건평 50평 (설치조례공포 1978. 5. 8.)
- 설치초기에는 문산지역 300명 인풍리지의 600명 밭원리지의 150명
의 율라이성이 김진등록 되었습.
- 현재 파주시 성명관리소에서 주1회 출장김진하고 있습.
- 진료실지

단위 : 명

구분 년도	년간 등록자수	년간 김진자수	년간 치료자수			비 고
			입원	미입원성	배독	
'95	58	720	23	8	1	
'96	42	516	19	10	1	
'97	20	480	15	8	0	

() 예산내역

단위: 원

년간예산	개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인 료 비	비 고
'97	₩2,005,000	866,000	983,000	156,000	
'98	₩20,224,000	2,881,000	1,000,000	2,343,000	개보수비 ₩14,000,000

□ 문제점

- 최근 김진실적이 년간 480명으로 1주 10명정도로 감소 추세에있습.
- 의정부시, 평택시 보건소 등 관내 성명관리소가 있는곳은 성명진료소
를 폐쇄하고 성명관리소에서 업무를 추진함.

□ 대책 및 효과

- 파주시 성명관리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운
영이 되므로 폐쇄 건의합니다.

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製造業者로 하여금 이를 生産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藥을 生産하게 한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當해 醫藥品製造業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76·12·31]

第16條 내지 第19條 削除 <76·12·31>

第20條 (豫防接種證明書)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또는臨時로 豫防接種을 받은者에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防接種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第21條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 및 보고)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한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83·12·20, 95·1·5>

②市長·郡守·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이 정하는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5·1·5>

[全文改正 76·12·31]

第22條 (豫防接種의 實施基準등)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76·12·31]

第5章 豫防施設

第23條 (第1種傳染病豫防施設의 設置) ①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種傳染病患者의 收容에 必要한 傳染病院, 隔離病舍 또는 隔離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②市·道知事는 第1種傳染病豫防上 必要할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必要한機關에 對하여 消毒所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第24條 (第3種傳染病豫防施設의 設置) ①市·道知事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種傳染病豫防上 必要한 療養所 또는 診療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63·2·9, 83·12·20>

②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種傳染病豫防上 必

(주 61)

要한療養所 또는 診療所를設置할수있다. <改正 63・2・9, 76・12・31, 95・1・5>

③私立療養所를設置하고자하는者는保健社會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 한다. <改正 76・12・31>

第25條 (公・私立 醫療機關의 代用) 市・道知事는公・私立醫療機關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일정한 期間 第1種傳染病의 隔離病舍 또는 第3種傳染病의 診療所로 代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83・12・20]

第26條 (第3種傳染病療養所의秩序維持) 第3種傳染病療養所長은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바에의하여入院患者의秩序維持에必要한措置를加할수있다. <改正 63・2・9, 76・12・31>

第27條 (第1種傳染病患者의收容拒絶禁止) 第1種傳染病豫防施設의管理者는正當한理由없이第1種傳染病患者의收容을拒絶할수없다.

第28條 (豫防施設의管理方法) 傳染病豫防施設의設備의管理方法은保健社會部令으로定한다. <改正 76・12・31>

第6章 患者및患家

第29條 (隔離患者) ①第1種傳染病患者는傳染病院, 隔離病舍, 隔離所나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定하는醫療機關등場所에隔離收容되어治療를받아야한다. <改正 76・12・31, 83・12・20, 95・1・5>

②第3種傳染病患者中保健社會部令으로정하는者는隔離收容되어治療를받아야한다. <改正 76・12・31>

③第1項과第2項이외의傳染病患者는自家에서隔離治療를하게할수있다.

[全文改正 63・2・9]

第30條 (業務從事의一時的 制限) ①傳染病患者는保健社會部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業務의性質上公衆과接觸이많은職業에從事할수없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②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性病에 관한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者가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營業을 營爲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83・12・20>

第31條 및 第32條 削除 <93・12・27>

(주 56)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1996. 3. 1) 조례 제10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성병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문산성병진료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66-4	파주시 일원

제 3 조(기능) 진료소는 관할구역내의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성병검진 및 보건자 색출
2. 성병환자의 간단한 예방치료
3. 성병환자에 대한 공중보건, 소양교육
4. 기타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소장) ①진료소에는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산부인과 또는 피부비뇨기과 전문의로서 1년 이상 공중보건기관에 종사한 자 또는 일반의로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한다.

③진료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공무원) 진료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검진비등의 면제) 진료소에서 행하는 검진 및 예방치료비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